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4가단1239 판결 [어업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0. 22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0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8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국식

별지